

항공기술교육원 장학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항공기술교육원 장학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항공기술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장학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4조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신입생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학생자치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4. 기타 교내외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5조 (자격) 장학금 지급대상은 교육원에 정규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지급하며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장학금액) 장학금액은 매 학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중수혜 제한)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이 안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명단의 공개) 장학생이 선정되면 명단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며 수혜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휴학 및 제적
2. 성적불량으로 인한 유급
3.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혜자 교체) 장학금 수혜 학생이 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 순위자로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금의 반환) 규정 제10조의 사유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수혜자는 사유발생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